## [자료집]

##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정 명 운

TIIITR 한군병제연구ㄴㅝㅝㄴ

## 녹색성장 연구 11-19-9-2

[자료집]

#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br> -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br> [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정 명 운

## [자료집]

#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br> -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br> [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br> Legislative Research <br> for Low Carbon Green Construction Promotion <br> - Verification of Green Construction <br> [Focused on Energy and Environmental Sectors) - 

$$
\begin{aligned}
& \text { 연구자 : 정명운(부연구위원) } \\
& \text { Jung, Myong-Un }
\end{aligned}
$$

2011. 10. 31. 

## 목 차

I. 녹색건축에 대한 법적 근거 ..... $\cdot 7$
$\Pi$.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정리 ..... 12
[표1]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의 법적 근거와 에너지 환경 분야 기준 정리 ..... 12
III.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 18
[표2]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 18
[표3]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 18
[표4]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19
[표5]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20
가. 공동주택 ..... 20
나. 업무용 건축물 ..... 21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22
[표6]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22
가. 공동주택 ..... 22
나. 복합건축물(주거) ..... 42
다. 업무용 건축물 ..... 61
라. 학교시설 ..... 84
마. 판매시설 ..... 109
바. 숙박시설 ..... 129
사. 그 밖의 건축물 ..... 152
[표7]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172
가. 공동주택 ..... 172
나.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 172
V . 신재생에너지 사용 건축물 인증 ..... 173
[표8]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 173

## 녹색건죽에 대한 법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 녹색건축물의 확대

$$
\begin{aligned}
& \text {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1)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 } \\
& \text { 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text { (2)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 \\
& \text {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
& \text { (3)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
\end{aligned}
$$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6)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
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확대 -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 녹색건축에 대한 법적 근거
2. 건축법상 에너지 효율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 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 1 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 2 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5)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
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 효과적에너좐리를 위하여 공으런축물 에너죠융듭 인증ㅈㄹㄹㄹ 시행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하고, 건축물 에니효류ㅇㅡㅡㅂ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건출물 에너지효융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절차
2. ㅎ율드ㅇㅡㅡㅂ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I. 녹색건축에 대한 법적 근거

## 융lo |r|ㄱl|ohrlypr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 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I.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정리
․ 녹색건축 관련 인중기준 정리

| 법규명 | 번 호 | 법적근거 및 내용 | 에너지 |  |  |  | 환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효율 |  | 신재생에너지이용 |  | 이산화탄소배출저감 |  |
|  |  |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 건축법 | 2010.12.30 <br> 시행 법률 <br> 제9858호 | - | 제 65 조(친환경건축 물의 인증) <br> 제 66 조 ( 건 축 물 의 에너지 이용과 폐 자재 활용) 제 66 조의 2 (건축물 의 에너지효율등 급 인증) | - | 없음 | $\times$ | 없음 | $\times$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 - 이용 - 보 | 2010.4.14 <br> 시행 법률 <br> 제9931호 | - | 없음 | $\times$ | 제 12 조 의 2 <br> (신•재생에 <br> 너지 이용 | - | 없음 | $\times$ |

II.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정리

| 법규명 | 번 호 | 법적근거 및 내용 | 에너지 |  |  |  | 환 경 <br> 이산화탄소배출저감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효율 |  | 신재생에너지이용 |  |  |  |
|  |  |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 급 촉진법 |  |  |  |  | 건축물에 대 <br> 한 인증 등) |  |  |  |
| 건물에너지 효 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 지식경제부 <br> 고시 제 2008-14호 | - | 에너지효율등급인 증기준(별표1) <br> 에너지효율등급평 가기준(별표2) | 표2 | 없음 | $\times$ | 없음 | $\times$ |
| 건 축물 에너지 <br> 효율등급 인증 규정 | 국토해양부 <br> 고시 제 <br> 20009-1306 <br> 호, 지식경 <br> 제부고시 제 <br> 2009-329호 | 건축법 제66 <br> 조의2, 동법 <br> 시행령 제91 <br> 조의 2 | 공동주택 <br> 업무용건축물 | 표3 | 없음 | $\times$ | 없음 | $\times$ |
| 친 환 경 건 축 물 의 인증에 관 한 규칙 | $\begin{array}{lll} \hline 2010.7 .1 & \text { 시 } \\ \text { 행 } & \text { 국토해 } \\ \text { 양부령 } & \text { 제 } \\ 244 \text { 호 } & \end{array}$ | 건축법 제65 조 제4항 | 심사분야 | 별표1 | 심사분야 | 별표1 | 심사분야 | 별표1 |

II.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정리

| 법규명 | 번 호 | 법적근거 및 내용 | 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효율 |  | 신재생에너지이용 |  | 이산화탄소배출저감 |  |
|  |  |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 친 환 경 건축물 인증기준 | 국토해양부 <br> 고시 제 <br> 2010-310호, <br> 환경부고시 <br> 제2010-52호 | 건축법 제65 조 제4항, 친 환 경 건 축 물 의 인증에 관 한 규칙 제6 조, 제 12 조 | 공동주택 | 별표1 | 공동주택 | 별표1 | 공동주택 | 별표1 |
|  |  |  | 복합건축물(주거) | 별표2 | 복 합 건 축 물 (주거) | 별표2 | 복합건축물 (주거) | 별표2 |
|  |  |  | 업무용 건축물 | 별표3 | 업무용 건축 물 | 별표3 | 업무용 건축물 | 별표3 |
|  |  |  | 학교시설 | 별표4 | 학교시설 | 별표4 | 학교시설 | 별표4 |
|  |  |  | 판매시설 | 별표5 | 판매시설 | 별표5 | 판매시설 | 별표5 |
|  |  |  | 숙박시설 | 별표6 | 숙박시설 | 별표6 | 숙박시설 | 별표6 |
|  |  |  | 그 밖의 건축물 | 별표7 | 그 밖의 건 축물 | 별표7 | 그 밖의 건축물 | 별표7 |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 국토해양부 환경부 | - | 공동주택 | 별표5 | 공동주택 | 별표5 | 공동주택 | 별표5 |
|  |  |  | 복합건축물 \|(주거부분) | 별표6 | 복합건축물 (주거부분) | 별표6 | 복합건축물 (주거부분) | 별표6 |

I.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정리

| 법규명 | 번 호 | 법적근거 및 내용 | 에너지 |  |  |  | 환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효율 |  | 신재생에너지이용 |  | 이산화탄소배출저감 |  |
|  |  |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  |  |  | 복합건축물 <br> (주거이외부분) | 별표7 | 복합건축물 (주거이외부 분) | 별표7 | 복합건축물 <br> (주거이외부분) | 별표7 |
|  |  |  | 업무용건축물 | 별표8 | 업 무 용 건 축 물 | 별표8 | 업무용건축물 | 별표8 |
|  |  |  | 학교시설 | 별표9 | 학교시설 | 별표9 | 학교시설 | 별표9 |
|  |  |  | 판매시설 | 별표10 | 판매시설 | 별표10 | 판매시설 | 별표10 |
|  |  |  | 숙박시설 | 별표11 | 숙박시설 | 별표11 | 숙박시설 | 별표11 |
| 신 재 생 에너지 <br> 이용 건축물 인 <br> 증에 관한 규칙 | 2011.4.13 <br> 시행 국토 <br> 해 양 부 령 <br> 제342호 | 신에너지 및 재 생 에 너 지 개발 - 이용 보급 촉진법 제 12 조의 2 제 4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 없음 | $\times$ | 건 축 물 인 증 심사기준 | 별표1 | 없음 | $\times$ |

․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정리

| 법규명 | 번 호 | 법적근거 및 내용 | 에너지 |  |  |  | 환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효율 |  | 신재생에너지이용 |  | 이산화탄소배출저감 |  |
|  |  |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 건 축 물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begin{aligned} & \text { 국토해양부 } \\ & \text { 고시 제 } \\ & \text { 2010-1031호 } \end{aligned}$ | 건축법 제66 조, 동법 시 행령 제91조, 건축물의 설 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22 조 | 단열재의 등급분류 | 별표1 | 없음 | $\times$ | 없음 | $\times$ |
|  |  |  | 단열재의 두께 | 별표2 |  |  |  |  |
|  |  |  | 창 및 문의 단열 성능 | 별표3 |  |  |  |  |
|  |  |  | 실내 및 실외측 <br> 표면 열전달저항 | 별표4 |  |  |  |  |
|  |  |  | 중공층의 열저항 | 별표5 |  |  |  |  |
| 친환경 주택의 <br> 건설기준 및 성능 | $\begin{aligned} & \text { 국토해양부 } \\ & \text { 고시 제 } \\ & 2009-1014 \text { 호 } \end{aligned}$ | 주 택 건 설 기 준 등에 관 한 규정 제 64조 제3항 | 단열성능 | 별표1 |  |  | 이산화탄소 저감율 | 별표10 <br> 별표11 |
|  |  |  | 부위별 총합열관 류율 | 별표2 |  |  |  |  |
|  |  |  | 난방부하율 | 별표3 |  |  |  |  |
|  |  |  | 에너지절감율 (세대용) | 별표10 |  |  |  |  |


| 법규명 | 번 호 | 법적근거 및 내용 | 에너지 |  |  |  | 환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너지 효율 |  | 신재생에너지이용 |  | 이산화탄소배출저감 |  |
|  |  |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내 용 | 표 |
|  |  |  | 에너지절감율 (단지용) | 별표11 |  |  |  |  |

III. 건죽물의 에너지효율등급

| 등 급 |  |
| :--- | :--- |
| 1 | $33.5 \%$ 이상 |
| 2 | $23.5 \sim 33.5 \%$ 밍 에넌지 절감율 |
| 3 | $13.5 \sim 23.5 \%$ 미만 |

> [표3]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준(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
\sum(\text { 단위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율×단위공동주택의 총전용면적 })
$$

신청주택의 총전용면적
III.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19
총에너지절감율(\%) $=$
$\sum$ (단위세대의 에너지절감율×단위세대의 전용면적)
단위공동주택의 총전용면적
III.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나. 업무용 건축물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br> 낭베넝에지노조요가 요ㅇㅑㅑ <br> 냉방에너는 깅간의요량 |
| :---: |
| +바닥면적 <br>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br> 급탕에너지소요량 |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 조명에너지소요량 |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 :---: |
| 환기에너지소요량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times 1$ 차에너지 환산계수
21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가. 공동주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1 . \\ \text { 토지 } \\ \text { 이용 } \end{gathered}$ | 1.1 | 생태적가치 | 1.1.1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펑가항목 | 2 |
|  | 1.2 | 인접대지 영향 | 1.2.1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 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항목 | 2 |
|  | 1.3 | 거주환경의 조성 | 1.3.1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 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 평가항목 | 3 |
|  |  |  | 1.3.2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 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 평가항목 | 3 |
|  |  |  | 1.3.3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 워크 연계여부 |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연 계여부 측정 | 평가항목 | 2 |
| $\begin{gathered} 2 . \\ \text { 교통 } \end{gathered}$ | 2.1 | 교통부하 <br> 저감 | 2.1.1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항목 | 2 |



| 구 분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2.1.2 <br>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여부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 의 적합성 | 평가항목 | 2 |
|  |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 평가항목 | 2 |
| 3. 에너지 | 3.1 에너지절약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 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 필수항목 | 12 |
|  | 3.2 <br> 지속가능한 <br> 에너지원사용 | 3.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평가항목 | 3 |
| 4. <br> 재료 <br> 및 <br> 자원 | 4.1 자원 절약 | 4.1.1 라이프스타일 변화를고려 한 평면개발 | 단위세대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 평가항목 | 3 |
|  | $\begin{array}{cc} \text { 폐기물 } \\ \text { 최소화 } \end{array}$ | 4.2.1 <br>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 평가항목 | 3 |
|  | 4.3 <br>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 4.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필수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4.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 평가항목 | 2 |
|  | $\begin{array}{ll} 4.4 & \text { 지 속 가 능 한 } \\ \text { 자원 활용 } \end{array}$ | 4.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 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항목 | 3 |
|  |  | 4.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br> 4.4.3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 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 구조부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7 |
|  |  | 4.4.4 <br>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의 절약 재료 및 자원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 력벽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항목 | 2 |
| $5$ 수 | 5.1 수 순 환 체 계 구축 | 5.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의 비 율로 평가 | 평가항목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자 } \\ & \text { 원 } \end{aligned}$ | 5.2 | 수자원 절약 | 5.2.1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 부에 따라 평가 | 필수항목 | 4 |
|  |  |  | 5.2.2 | 우수이용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 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3 |
|  |  |  | 5.2.3 |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 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 수 등으로의 사용율을 평가 | 평가항목 | 3 |
| 6. <br> 환경 <br> 오염 <br> 방지 | $\begin{aligned} & \text { 6.1 지 구 온 난 화 } \\ & \text { 방지 } \end{aligned}$ |  | 6.1.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평가항목 | 3 |
|  |  |  | 6.1.2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 정물질의 사용 금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 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3 |
| 7. <br> 유지 <br> 관리 | 7.1 | 체계적인 현장관리 | 7.1.1 |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 획의 합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 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평가항목 | 1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7.2 | 효율적인 건물관리 | 7.2.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 침 제공의 타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필수항목 | 2 |
|  | 7.3 | 효율적인 <br> 세대관리 | 7.3.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1 |
| 8. <br> 생태 <br> 환경 | 8.1 | 대지 내 녹지 공간 조성 | 8.1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대지내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 의 외곽길이의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 중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 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 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항목 | 2 |
|  |  |  | 8.1. | 자연지반녹지율 |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 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 평가항목 | 2 |
|  | 8.2 | 외부공간 및 건 물 외 피 의 | 8.2. | 생태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 | 필수항목 | 10 |



| 구 분 |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생태적 기능 확보 |  | 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  |  |
|  | 8.3 | 생물서식 <br> 공간 조성 | 8.3.1 비오톱 조성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 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4 |
| 9. <br> 실 내 <br> 환경 | 9.1 | 공기환경 | 9.1.1 <br>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 에 대해 평가 | 필수항목 | 6 |
|  |  |  | 9.1.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 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 평가항목 | 3 |
|  |  |  | $\begin{array}{ll} \text { 9.1.3 } & \text { 건 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 \\ & \text {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 \end{array}$ |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는지를 평가 | 평가항목 | 1 |
|  | 9.2 | 온열환경 | 9.2.1 <br>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 각 실별 또는 난방존별로 시간제어운 정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 치 적용 비율 | 평가항목 | 2 |
| 9. | 9.3 | 음환경 | 9.3.1 층간 경계 바닥의 바닥 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 평가항목 | 2 |

IV．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실내 <br> 환경 |  |  |  | 격음 차단성능 |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취 득한 인정서，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  |  |
|  |  |  | 9.3.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세대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건 식벽체인 경우에는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 평가항목 | 2 |
|  |  |  | 9.3. |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 한 실내•외 소음도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 2 |
|  |  |  | 9.3.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채택한 급－배수소음 저감공법별 배점 을 합산하여 평가 | 평가항목 | 2 |
|  | 9.4 | 빛환경 | 9.4.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심사대상 건축물（단지）의 전체 세대수 에 대한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 6 시간동안 최소 2 시간의 연속일 조를 받는 세대율（\％）을 평가 | 평가항목 | 4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begin{aligned} & \bar{K} \\ & \frac{K \mid 0}{\lambda} \end{aligned}$ | $\stackrel{\otimes}{0}$ | $\stackrel{\ominus}{\circ}$ | n | $\underset{O}{\circ}$ |
| :---: | :---: | :---: | :---: | :---: |
|  | － <br> O际 No <br> lof od <br> 衣 正 of <br> 竕 右 <br> 嶰 夜 <br> 析10 4 <br>  | $\sim$ on of N No lof <br> 조 아交 苞唎 夜 <br> 顺 坏 | m on of N No吽 ${ }^{\circ}$ <br> 좊 아交 苞啊 夜 <br>  KJ 坏 | $\rightarrow$ on <br> ofu No <br> 性 <br> 줄 아 <br> 交 苞 <br> 啝 夜 <br> 㻢 佃 <br> KJ 罱 |
| $\begin{aligned} & \text { 파 } \\ & \Gamma- \end{aligned}$ | III | $\stackrel{\text { III }}{\sim}$ | $\underset{\sim}{n}$ | $\underset{\square}{71}$ |


|  | 8 | $\stackrel{\otimes}{0}$ | $\stackrel{\infty}{\infty}$ | $\stackrel{\ominus}{0}$ | $\stackrel{0}{0}$ | $\stackrel{n}{n}$ | $\bigcir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I }-1 \\ & \text { ㄱ- } \end{aligned}$ | TII | $\stackrel{\text { III }}{\sim}$ | $\underset{\sim}{\text { M }}$ | $\stackrel{\square 17}{+}$ | $\cdots$ | กII | $\stackrel{\text { III }}{\sim}$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 조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br> -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6 <br>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br>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및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등) |
|  | 본인증 | -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등) <br> -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된 에너지절약계획서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 공 동 주 택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에너지 |  |  |  |  |
| 평가범주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  |  |  |  |
| 평가기준 | 3.2.1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
| - 세부 평가기준 |  |  |  |  |  |
| 평가목적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  |  |  |  |
| 평가방법 |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구 분 |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  |  | 가중 |
|  | 1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1.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관련 설계도서 및 설치비율 계산서 |
|  | 본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및 설치비율 계산서 <br> - 현장설치 사진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평 점 |
| :---: | :---: | :---: | :---: |
|  |  |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 2.0 |
|  |  |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 1.0 |
|  |  | 3.2.1 항목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이 5 급 이상인 경우 | 1.0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br>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br>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  |
| 제출서류 | 예비 <br> 인증 | - 관련 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 에너지성능검토서 및 관련자료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 :---: | :---: |
|  | $\begin{aligned} & \frac{\mathrm{K} \mid 0}{\mathrm{O}} \mathrm{~J} \\ & \text { 페 } \end{aligned}$ |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공동주택 인증등급 산정표 |  |  |  |  |  |
| :---: | :---: | :---: | :---: | :---: | :---: |
| 분 야 | 분야별 총점 <br> (a) | 획득점수 <br> (b) | 획득비율1) <br> (b) $/(\mathrm{a})=(\mathrm{c})$ | 가중치 <br> (d) | 분야별 최종점수 (c) $\times$ (d) |
| 토지이용 | 12 |  |  | 10 |  |
| 교통 | 6 |  |  | 5 |  |
| 에너지 | 15 |  |  | 20 |  |
| 재료 및 자원 | 15 |  |  | 15 |  |
| 수자원 | 13 |  |  | 10 |  |
| 환경오염방지 | 6 |  |  | 5 |  |
| 유지관리 | 4 |  |  | 5 |  |
| 생태환경 | 18 |  |  | 10 |  |
| 실내환경 | 24 |  |  | 20 |  |
| 합 계 |  |  |  |  |  |
| 리모델링에 따른 가산 점수(4.4.3/4.4.4 항목) |  |  |  |  |  |


| $\quad$ 필수항목 이행 여부 |  | Yes/No |  |  |
| :--- | :--- | :--- | :---: | :---: |
| 3.1 .1 에너지 절약 |  |  |  |  |
| 4.3 .1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  |
| 4.4 .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
| 5.2 .1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  |  |  |
| 7.1 .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  |
| 8.2 .1 생태면적률 |  |  |  |  |
| 9.1 .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  |  |  |
| 총 점 |  |  |  |  |
| 등 급 |  |  |  |  |
|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1. <br> 토지 <br> 이용 | 1.1 | 생태적가치 | $\begin{aligned} & \text { 기존대지의 생태 } \\ & \text { 학적 가치 } \end{aligned}$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용도 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평가 <br> 항목 | 2 |
|  | 1.2 | 인접대지 <br> 영향 | 1.2.1 <br> 일조권 간섭방지 <br> 대책의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 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2 . \\ \text { 교통 } \end{gathered}$ | 2. | 교통부하 <br> 저감 | 2.1.1 <br> 대중교통에의 근 <br> 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버 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 <br> 항목 | 2 |
|  |  |  | 2.1.2 $\begin{aligned} & \text { 자전거 보관소 } \\ & \text { 설치여부 }\end{aligned}$ |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3. 에너지 | 3.1 | 에너지절약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 시)의 '에너지성능지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 필수 <br> 항목 | 12 |
|  | 3.2 | 지속가능한 <br> 에너지원 <br> 사용 | 3.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 를 부여 | 평가 <br> 항목 | 3 |



| 구 분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4. <br> 재료 <br> 및 <br> 자원 | 4.1 자원 절약 | 라이프스타일 변 <br> 4.1.1 화를 고려한 평 면개발 | 각 단위세대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4.2 <br> 폐기물 <br> 최소화 | 생활용 가구재 <br> 4.2.1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 평가 <br> 항목 | 3 |
|  | $\begin{aligned} & 4.3 \text { 생활 폐기물 } \\ & \text { 분리수거 } \end{aligned}$ | 4.3.1 <br> 재활용 가능자원 의 분리수거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품목 종류 에 의해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4.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begin{array}{ll} 4.4 & \text { 지 속 가 능 한 } \\ \text { 자원 활용 } \end{array}$ | 유효자원 재활용 <br> 4.4.1 을 위한 친환경인 증제품 사용여부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 마크의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4.4.2 <br> 재료의 탄소배출 량 정보 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 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 4.4.3 기존 건축물의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 가산 | 7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주요구조부 재사 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항목 |  |
|  |  |  |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 으로 재료 및 자 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 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5 . \\ \text { 수자원 } \end{gathered}$ |  | 수 순 환 체 계 구축 | 5.1.1수부하 절감대 책의 타당성 |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5.2 수자원 절약 |  | 5.2.1 <br> 생활용 상수 절감 <br> 대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 필수 <br> 항목 | 4 |
|  |  |  | 5.2.2 우수 이용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 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 하는 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5.2.3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 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율 을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6. <br> 환경 <br> 오염 <br> 방지 | $\begin{aligned} & 6.1 \text { 지구온난화 } \\ & \text { 방지 } \end{aligned}$ |  | 6.1.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6.1 | 오존층보호를 하 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 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begin{gathered} 7 . \\ \text { 유지 } \\ \text { 관리 } \end{gathered}$ | 7.1 | 체계적인 현장관리 | 7.1 | 환경을 고려한 현 장 관 리 계 획 의 합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 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평가 <br> 항목 | 1 |
|  | 7.2 | 효율적인 건물관리 | 7.2 | 운영/유지관리 문 서 및 지침 제공 의 타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 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 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7.3 | 효율적인 세 대관리 | 7.3.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문서 또 는 전자문서)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8$ <br> 생태 | $\begin{aligned} & 8.1 \text { 대지 내 녹 } \\ & \text { 지공간 조성 } \end{aligned}$ |  | 8.1. | 자연지반녹지율 |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 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환경 | 외부공간 및 건 물 외 피 의 생태적 기능 확보 | 8.2.1 생태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6 |
|  | $\begin{aligned} & 8.3 \text { 생 물 서 식 공 } \\ & \text { 간조성 } \end{aligned}$ | 8.3.1 비오톱 조성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 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9. <br> 실내 <br> 환경 | 9.1 공기환경 | 실 내 공 기 오 염 물 <br> 9.1.1 질 저방출 자재 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 필수 <br> 항목 | 6 |
|  |  | $\begin{array}{\|l} \text { 9.1.2 } \begin{array}{l} \text { 자연 환기성능 } \\ \text { 확보 여부 } \end{array} \end{array}$ |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 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건 축 자 재로 부 터 <br> 9.1.3 배출되는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는지 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 9.2 온열환경 | 각 세대별 자동 <br> 9.2.1 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 각 실별 또는 난방존별로 시간제어 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의 적용비율 | 평가 <br> 항목 | 2 |


| 구 분 |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9.3 | 음환경 | 층간 경계바닥의 <br> 9．3．1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 r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 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감 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  | 9．3．2 <br> 9．3．2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세대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건식벽체인 경우에는 r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 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  | 교 통 소 음（도로， <br> 9．3．3 철도）에 대한 실 내 소음도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실나 소음도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  | 9．3．4 <br>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채택한 급－배수소음 저감공법별 배점을 합산하 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가중치 | 구 분 | 에너지효율등급 | 가중치 |
| :---: | :---: | :---: | :---: | :---: | :---: |
| 1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 1.00 |  |  |  |
| 2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 0.90 | 1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0.90 |
| 3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 0.80 | 2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2 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0.70 |
| 4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 0.70 |  |  |  |
| 5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 0.60 | 3 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3 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0.50 |
| 6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 0.50 | 4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4 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0.40 |
| 7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 0.40 |  |  |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 조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br> -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6 <br>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br>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 제출서류 | 예비 <br> 인증 | -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및 관련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
|  | 본인증 | -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등) <br> -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된 에너지절약계획서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 제출서류 | 예비 <br> 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
|  | 본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br> - 현장설치 사진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  |  |  | 복합건축물(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6 환경오염방지 |  |  |  |  |  |  |  |  |  |  |
| 평가범주 | 6.1 지구온난화방지 |  |  |  |  |  |  |  |  |  |  |
| 평가기준 | 6.1.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  |  |  |  |  |  |  |
| - 세부 평가기준 |  |  |  |  |  |  |  |  |  |  |  |
| 평가목적 |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건설부문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므로, 이를 건축물의 계획단계 에서부터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절감을 위해 적용된 기술 및 사용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한다. |  |  |  |  |  |  |  |  |  |  |
| 평가방법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  |  |  |  |  |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 각 평점의 합, 최대 3점 적용 |  |  |  |  |  |  |  |  |  |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  |  |  |  |  |  | 평 점 |
|  | 난방설비용량 또는 냉방설비용량의 $20 \%$ 이상을 건축물 내 열병합발전으로 충당하는 |  |  |  |  |  |  |  |  |  | 2.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  |  |  |  | 복합건축물(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6 환경오염방지 |  |  |  |  |  |  |  |  |  |  |  |  |
| 평가범주 | 6.1 지구온난화방지 |  |  |  |  |  |  |  |  |  |  |  |  |
| 평가기준 | 6.1.2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  |  |  |  |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과 배출을 줄인다.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  |  |  |  |  |  |  |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  |  |  |  |  |  |  |
| 산출기준 | 각 평점의 합 |  |  |  |  |  |  |  |  |  |  |  |  |
|  | 오존층파괴물질 저감 |  |  |  |  |  |  |  |  |  |  |  | 평 점 |
|  |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파괴지수(ODP)가 0.03 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600이하인 경우 |  |  |  |  |  |  |  |  |  |  |  | 1 |
|  |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 이상이 오존파괴지수(ODP)가 0.03 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지 |  |  |  |  |  |  |  |  |  |  |  | 1 |


|  |  | 수(GWP)가 1600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할론을 포함하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 1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br> -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http://www.ipcc.ch/ipccreports/ar4-wg1.htm),Chapter 2) <br> - 쿄토 유엔기후변화 기본협약 <br> -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할론규제 조치 <br> -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파괴영향을 1 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br> -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란 이산화탄소(CO2)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1 로 하였 을 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br> 주) 이 기준에서는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Climate Change 2007" Fourth Assessment Report에 따른 지속시간 100 년의 GWP를 적용한다. |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냉방기기의 사용냉매 명세서 <br> - 단열재의 종류 및 사용된 특정물질의 명세서 <br> - 소화기 제품 성능서 <br> - 사방서로 갈음 가능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본인증 | - 냉방기기의 사용냉매 명세서 <br> - 단열재의 종류 및 사용된 특정물질의 명세서 <br> - 소화기 제품 성능서 |
| :--- | :--- | :--- |


| 복합건축물(주거) 인증등급 산정표 |  |  |  |  |  |
| :---: | :---: | :---: | :---: | :---: | :---: |
| 분 야 | 분야별 총점 <br> (a) | 획득점수 <br> (b) | 획득비율1) <br> (b) $/(\mathrm{a})=$ (c) | 가중치 <br> (d) | 분야별 최종점수 (c) $\times$ (d) |
| 토지이용 | 4 |  |  | 5 |  |
| 교통 | 4 |  |  | 5 |  |
| 에너지 | 15 |  |  | 20 |  |
| 재료 및 자원 | 15 |  |  | 18 |  |
| 수자원 | 13 |  |  | 10 |  |
| 환경오염방지 | 6 |  |  | 5 |  |
| 유지관리 | 4 |  |  | 7 |  |
| 생태환경 | 12 |  |  | 10 |  |
| 실내환경 | 20 |  |  | 20 |  |
| 합 계 |  |  |  |  |  |
| 리모델링에 따른 가산 점수(4.4.3/4.4.4 항목) |  |  |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필수항목 이행 여부 | Yes/No |
| :---: | :---: |
| 3.1.1 에너지 절약 |  |
| 4.3.1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4.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5.2.1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
| 7.1.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
| 총 점2) |  |
| 등 급 |  |
|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다. 업무용 건축물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1. <br> 토지 <br> 이용 | $\begin{array}{ll} \text { 생태적 } \\ \text { 가치 } \end{array}$ |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평가 <br> 항목 | 2 |
|  | 1.2 인 접 대 지 영향 |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으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 <br> 항목 | 2 |
| 2. <br> 교통 | 2.1 교 통 부 하저감 | 2.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 <br> 항목 | 2 |
|  |  | 2.1.2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 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3. 에너지 | $3.1$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 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 급을 근거로 평가 | 필수 <br> 항목 | 12 |
|  |  | 3.1.2 계량기 설치 여부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 기 설치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3.1.3 조명에너지 절약 | 조명밀도 및 조명방식에 대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 지 속 가 능 <br> 3.2 한 에너지 원 사용 | 3.2.1 신 재생에너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평가 <br> 항목 | 3 |
| 4. <br> 재료 <br> 및 <br> 자원 | 4.1 자원 절약 | 4.1.1 <br>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 비재 절약 | 건축물내 화장실에서 세수 후 건조방법에 대하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 지 속 가 능 <br> 4.2 한 자원 활용 | 4.2.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 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4.2.2 <br>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4.2.3 <br>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 <br> 4.2.4 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 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br> 항목 | 7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4.2. |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 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br> 항목 | 2 |
| 5. 수자원 |  | 수 순 환 체 <br> 계 구축 | 5.1.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 당성 |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연계면적 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5.2 | 수자원 <br> 절약 | 5.2.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 필수 <br> 항목 | 4 |
|  |  |  | 5.2. | 우수 이용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 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5.2.3 |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의 사용율을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6. 환경 오염 방지 | 6.1 <br> 지 구 온 난 <br> 화 방지 |  | 6.1 |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 템의 적용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6.1.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7. <br> 유지 <br> 관리 | 7.1 | 7.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 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평가 <br> 항목 | 1 |
|  | $\begin{array}{ll}  & \text { 효 율 적 인 } \\ & \text { 건물관리 } \end{array}$ | 7.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 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 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7.2.2 TAB 및 커미셔닝 실시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 시스템 <br> 7.3 변경의 용이성 |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하 <br> 7.3.1 여 공간 배치 및 시스템 변경 용이성 |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에 서 변경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8. <br> 생태 <br> 환경 | 대지 내 <br> 8.1 녹지공간 <br> 조성 | 8.1.1 자연지반 녹지율 |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 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 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외 부 공 간 <br> 8.2 및 건물외 피의 생태 | 8.2.1 생태 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 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 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 평가 <br> 항목 | 6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적 기능확 } \\ & \text { 보 } \end{aligned}$ |  | 비율로 평가 |  |  |
|  | 8.3 생 물 서 식 공간조성 | 8.3.1 비오톱 조성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으로 대상 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9. <br> 실내 <br> 환경 | 9.1 공기환경 |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 해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9.1.2 자연환기성능 확보 엽 | 이용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 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환기구의 설치 여 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9.1.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 기구 설계도서 확인 | 평가 <br> 항목 | 3 |
|  |  | 9.1.4 <br> 건축자재로부터 배출되는 <br> 그 밖의 유해물질 억제 |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 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 9.2 온열환경 | 9.2.1 실내 자동온도조절 장치 채택 여부 |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 평가 <br> 항목 | 2 |
|  | 9.3 음환경 | 9.3.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 | 평가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한 실내 소음도 | 시)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 소음도를 평가 | 항목 |  |
|  | 쾌적한 <br> 9.4 실내환경 <br> 조성 | 9.4.1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 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9.4.2 <br> 9.4.2 거주자를 위한 쾌적한 실 <br> 내환경 조성 | 거주자에게 실내환경 조절방식의 제공여부 를 통해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IV．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begin{aligned} & \bar{K} \\ & \frac{\mathrm{~K} \mid \mathrm{O}}{1} \end{aligned}$ | O. | $\stackrel{\ominus}{0}$ | $\stackrel{i}{0}$ | O |
| :---: | :---: | :---: | :---: | :---: |
|  | HIT of H <br>  | $\dagger$ HI of 방 <br>  | it of 니웅 <br>  | it of $\stackrel{y}{10}$ 장 <br>  |
| $\begin{aligned} & \text { 파 } \\ & \Gamma- \end{aligned}$ | \＃1 | $\stackrel{H}{N}$ | $\begin{gathered} i / \pi \\ n \end{gathered}$ | $\stackrel{H}{\downarrow}$ |


| $\begin{aligned} & \bar{k} \\ & \frac{k \nmid O}{n} \end{aligned}$ | $8$ | $\stackrel{\otimes}{0}$ | $\stackrel{\infty}{\infty}$ | $\stackrel{\overbrace{}}{\circ}$ | $\stackrel{8}{0}$ | n | $\stackrel{\circ}{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파 } \\ & \text { ㄱ } \end{aligned}$ | H1 | $\stackrel{\uparrow}{\sim}$ | $\underset{\sim}{\text { HIII }}$ | $\stackrel{H}{\square}$ | $\begin{aligned} & \text { HIII } \\ & n \end{aligned}$ | Hi/ | $\stackrel{\text { 「II }}{\sim}$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 조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br> -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6 <br>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br>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및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등) |
|  | 본인증 | -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및 관련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br> -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된 에너지절약계획서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업무용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에너지 |  |  |  |
| 평가범주 | 에너지 절약 |  |  |  |
| 평가기준 | 3.1.2 | 계량기 설치 여부 |  |  |
| - 평가 세부기준 |  |  |  |  |
| 평가목적 |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가 전력 및 화석연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용도별 사용 에너지의 계량기를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
| 평가방법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  |  |  |
| 배 점 | 2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구 분 |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설치 여부 |  | 가중치 |
|  | 1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5종 이상 설치된 경우 |  | 1.0 |
|  | 2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3종 이상 설치된 경우 |  | 0.5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 업무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에너지 |  |  |  |  |
| 평가범주 | 3.1 에너지 절약 |  |  |  |  |
| 평가기준 | 3.1.3 조명에너지 절약 |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
| 평가목적 |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  |  |  |  |
| 평가방법 | 조명밀도 및 조명방식에 대한 평가 |  |  |  |  |
| 배 점 | 4점(평가항목) |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 구 분 | 기 준 |  |  | 가중치 |
|  | 1급 | 기준층 사무공간이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방위별 외주 부에 자연채광이용을 위한 조광센서가 설치된 경우, 또는 KS A 3011에 의한 작 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천장면 평균조명밀도가 $10 \mathrm{~W} / \mathrm{m}^{2}$ 이하로 설계된 경우 |  |  | 1.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업무용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에너지 |  |  |
| 평가범주 | 3.2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  |  |
| 평가기준 | 3.2.1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  |
| 세부 평가기준 |  |  |  |  |
| 평가목적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  |  |  |
| 평가방법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구 분 |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  | 가중치 |
|  | 1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 1.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br>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 예비 출서류 <br> 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  |
|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br> - 현장설치 사진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평 점 |
| :---: | :---: | :---: | :---: |
|  |  |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 2.0 |
|  |  |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 1.0 |
|  |  | 3.2.1 항목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이 5급 이상인 경우 | 1.0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br>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br> -「신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관련 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 에너지성능검토서 및 관련자료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  |  | 업무용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6 환경오염방지 |  |  |  |  |  |  |  |  |  |
| 평가범주 | 6.1 지구온난화방지 |  |  |  |  |  |  |  |  |  |
| 평가기준 | 6.1.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  |  |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  |  |  |  |  |
| 평가목적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과 배출을 줄인다. |  |  |  |  |  |  |  |  |  |
| 평가방법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  |  |  |  |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  |  |  |  |
| 산출기준 | 각 평점의 합 |  |  |  |  |  |  |  |  |  |
|  | 오존층파괴물질 저감 |  |  |  |  |  |  |  |  | 평 점 |
|  |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파괴지수(ODP)가 0.03 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600이하인 경우 |  |  |  |  |  |  |  |  | 1 |
|  |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 이상이 오존파괴지수(ODP)가 0.03 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지 |  |  |  |  |  |  |  |  | 1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 | :--- | :--- |
|  | 본인증 | - 사방서로 강앙기기의 가 사용능 냉매 명세서 <br> - 단열재의 종류 및 사용된 특 정물질 의 명세서 <br> - 소화기 제품 성능서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업무용 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 |  |  |  |  |  |
| :---: | :---: | :---: | :---: | :---: | :---: |
| 분 야 | 분야별 총점 <br> (a) | 획득점수 <br> (b) | 획득비율1) <br> (b) $/(\mathrm{a})=(\mathrm{c})$ | 가중치 <br> (d) | 분야별 최종점수 <br> (c) $\times$ (d) |
| 토지이용 | 4 |  |  | 5 |  |
| 교통 | 4 |  |  | 5 |  |
| 에너지 | 21 |  |  | 25 |  |
| 재료 및 자원 | 8 |  |  | 15 |  |
| 수자원 | 13 |  |  | 10 |  |
| 환경오염방지 | 6 |  |  | 5 |  |
| 유지관리 | 9 |  |  | 7 |  |
| 생태환경 | 12 |  |  | 10 |  |
| 실내환경 | 21 |  |  | 18 |  |
| 합 계 |  |  |  |  |  |
| 리모델링에 따른 가산 점수(4.2.4/4.2.5 항목) |  |  |  |  |  |


| 필수항목 이행 여부 | Yes/No |
| :---: | :---: |
| 3.1.1 에너지 절약 |  |
| 4.2.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4.2.2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5.2.1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
| 7.1.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
| 총 점 |  |
| 등 급 |  |
|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1. <br> 토지 <br> 이용 | 1.1 | 생태적 가치 | $\begin{aligned} & \text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 \\ & \text { 가치 } \end{aligned}$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평가 <br> 항목 | 2 |
|  | 1.2 | 인접대지 영향 | 1.2.1 <br> 일조권 간섭방지 대 <br> 책의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 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2 . \\ \text { 교통 } \end{gathered}$ | 2.1 | 교통부하저감 | 2.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 <br> 항목 | 2 |
|  |  |  | 2.1.2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3. 에너지 | 3.1 | 에너지 <br> 절약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전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 시)의 '에너지성능지표'에서 취득한 점수를 근 거로 평가 | 필수 <br> 항목 | 12 |
|  |  |  | 3.1.2 계량기 설치 여부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3.1.3 | 조명에너지 절약 | 조명밀도 및 조명방식에 대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  | 지속가능한 에 너지원 사용 | 3.2.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 수를 부여 | 평가 <br> 항목 | 3 |
| 4. <br> 재료 <br> 및 <br> 자원 |  | 자원 절약 | 4.1. |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 건축물내 화장실에서 세수 후 건조방법에 대 하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 4.2 |  | 4.2.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 부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 4.2.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 류에 의해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 4.2.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 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  | 4.2.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 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  | 4.2. | 기존 건축물의 주요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 가산 | 7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항목 |  |
|  |  |  | 기존 건축물의 비내 <br> 4.2.6 력벽 재사용으로 재 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5 . \\ \text { 수자원 } \end{gathered}$ | 5.1 | 수순환체계 구축 | 5.1.1 <br>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br> 타당성 |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5.2 | 수자원 절약 | 5.2.1 <br> 생활용 상수 절감 대 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 라 평가 | 필수 <br> 항목 | 4 |
|  |  |  | 5.2.2 우수 이용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5.2.3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 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 용율을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6. <br> 환경 <br> 오염 <br> 방지 | 6.1 | 지구 온난화 방지 | 6.1.1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의 적용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6.1.2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 정물질의 사용금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 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6.2 | 공기환경 | 6.2.1 | 운동장 먼지 발생 방지 | 운동장 먼지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저감공법 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7. <br> 유지 <br> 관리 | 7.1 | 체계적인 현장관리 | 7.1.1 |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계획의 합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 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평가 <br> 항목 | 1 |
|  | 7.2 | 효율적인 <br> 건물관리 | 7.2.1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 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 7.2.2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 7.3 | 향상된 실내 <br> 환경 및 유지 <br> 관리 | 7.3.1 | 보행시에 발생하는 먼지 배출량 감소 | 건축물 내외의 출입구에 먼지털이가 가능한 매트나 매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리드 설치 유무 또는 신발장을 설치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8. 생태 환경 | $\begin{array}{\|ll} 8.1 & \text { 대지 내 녹지 } \\ \text { 고가 자서 } \end{array}$ | 8.1.1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대지내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의 외곽 길이의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 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 8.1.2 자연지반 녹지율 |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 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8.2 <br> 외부공간 및 건 물 외 피 의 생태적 기능 확보 | 8.2.1 생태 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 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 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6 |
|  | $\begin{aligned} & 8.3 \text { 생물서식공간 } \\ & \text { 조성 } \end{aligned}$ | 8.3.1 비오톱 조성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  | 8.3.2 생태학습원 조성 | 대지 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에 대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부 문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8.4 | 자 연 자 원 의 활용 | 8.4.1 | 표토 재활용율 | 대지 자체의 표토를 식재지역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체 표토량 대비 식재지반 에 이용되는 재활용 표토량의 비율(\%)을 산정 하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9. <br> 실내 <br> 환경 | 9.1 | 공기환경 | 9.1.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 방출 자재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한 평가 | 필수 <br> 항목 | 6 |
|  |  |  | 9.1.2 |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 이용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 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9.1 .3 | 건축자재로부터 배출 되는 그 밖의 유해물 질 억제 |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는 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 9.2 | 온열환경 | 9.2.1 | 적정 열원기기 배치 및 실내 자동온도 조 절장치 채택 여부 | 가열원의 공급방식과 각 실별 또는 존별로 구 획된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9.3 | 음환경 | 9.3.1 | 교통소음(도로, 철도) 에 대한 실내 소음도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실내소음도를 평가 |  |  |
|  | 직사일광 이 <br> 9.4 용 및 향상된 <br> 시환경 확보 | 직사일광을 이용하면 <br> 9.4.1 서 현휘를 감소시키 <br> 기 위한 계획 수립 | 현휘(glare)를 줄이면서 직사일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시설을 한 경우 | 평가 <br> 항목 | 2 |
|  | $\begin{array}{ll}  & \text { 쾌적한 실내 } \\ 9.5 & \text { 환경 조성 } \end{array}$ | 9.5.1 <br> 휴식 및 재충전을 위 한 공간 마련 | 건축물 내 이용자에게 쾌적한 전용공간이 조 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학 교 시 설 |
| :---: | :---: | :---: | :---: |
| 평가부문 | 3 에너지 |  |  |
| 평가범주 | 3.1 에너지 절약 |  |  |
| 평가기준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 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  |  |
| 평가방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를 근거로 평가 |  |  |
| 배 점 |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구 분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가중치 |
|  | 1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 1.0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구 분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가중치 |
| :---: | :---: | :---: | :---: | :---: |
|  |  | 2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 95 점 미만인 경우 | 0.90 |
|  |  | 3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85 점 이상 90 점 미만인 경우 | 0.80 |
|  |  | 4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80 점 이상 85 점 미만인 경우 | 0.70 |
|  |  | 5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0 점 미만인 경우 | 0.60 |
|  |  | 6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 0.50 |
|  |  | 7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0 점 미만인 경우 | 0.40 |
|  |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평점합계의 평균은 각 단위건축물의 바닥면적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br>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참고자료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 조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br> -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6 <br>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  |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등)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학 교 시 설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에너지 |  |  |  |
| 평가범주 | 3.1 에너지 절약 |  |  |  |
| 평가기준 | 3.1.2 계량기 설치 여부 |  |  |  |
| - 평가 세부기준 |  |  |  |  |
| 평가목적 |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가 전력 및 화석연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용도별 사용 에너지의 계량기를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
| 평가방법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  |  |  |
| 배 점 | 2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구 분 |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설치 여부 |  | 가중치 |
|  | 1 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5종 이상 설치된 경우 |  | 1.0 |
|  | 2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3종 이상 설치된 경우 |  | 0.5 |
|  | -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예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콘센트, 공조용 팬동력, 그 밖의 - 중앙컴퓨터시스템에서 용도별 사용에너지 검침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  |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br> - BREEAM for Office |
| 제출서류 | 예비 <br> 인증 | - 계량기 설치가 포함된 설계도서 <br>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
|  | 본인증 | - 계량기 설치 도서 <br> - 계량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증빙서류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 제출서류 | 예비 <br> 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
|  | 본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br> - 현장설치 사진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평 점 |
| :---: | :---: | :---: | :---: |
|  |  | 는 경우 |  |
|  |  |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 2.0 |
|  |  |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 1.0 |
|  |  | 3.2.1 항목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이 5급 이상인 경우 | 1.0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br>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br>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관련 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 에너지성능검토서 및 관련자료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학 교 시 설 |  |
| :---: | :---: | :---: | :---: | :---: |
| 평가부문 | 6 환경오염방지 |  |  |  |
| 평가범주 | 6.1 지구 온난화 방지 |  |  |  |
| 평가기준 | 6.1.2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 평가목적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과 배출을 줄인다. |  |  |  |
| 평가방법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각 평점의 합 |  |  |  |
|  | 오존층파괴물질 저감 |  |  | 평 점 |
|  |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파괴지수(ODP)가 0.03 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600이하인 경우 |  |  | 1 |
|  |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 이상이 오존파괴지수(ODP)가 0.03 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 지수(GWP)가 1600 이하인 경우 |  |  | 1 |
|  | 할론을 포함하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  |  | 1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평가 | 자료 | 제출서류 |
| :---: | :---: | :---: |
| 참고자료 |  |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br> - IPCC Fourth Assessment Report(http://www.ipcc.ch/ipccreports/ar4-wg1.htm),Chapter 2) <br> - 쿄토 유엔기후변화 기본협약 <br> -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할론규제 조치 <br> -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파괴영향을 1 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br> -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란 이산화탄소(CO2)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1 로 하였 을 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br> 주) 이 기준에서는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Climate Change 2007" Fourth Assessment Report에 따른 지속시간 100 년의 GWP를 적용한다.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냉방기기의 사용냉매 명세서 <br> - 단열재의 종류 및 사용된 특정물질의 명세서 <br> - 소화기 제품 성능서 <br> - 사방서로 갈음 가능 |
|  | 본인증 | - 냉방기기의 사용냉매 명세서 <br> - 단열재의 종류 및 사용된 특정물질의 명세서 <br> - 소화기 제품 성능서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O 일반 크레이 포장(마사토+석분 등) 이외 운동장 표층에 먼지 발생량이 적은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br> 먼지억제를 위한 별도의 시공을 한 경우 : 3 점 |
| :---: | :--- | :--- |
| ※ 운동장 포장 후 먼지 억제를 위한 시공을 한 경우란 학교 운동장에 먼지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  |
| 먼지억제제 등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 \% 인조잔디에 의한 공법은 제외한다. |  |$|$


| 학교시설 인증등급 산정표 |  |  |  |  |  |
| :---: | :---: | :---: | :---: | :---: | :---: |
| 분 야 | 분야별 총점 <br> (a) | 획득점수 <br> (b) | 획득비율1) <br> (b) $/(\mathrm{a})=(\mathrm{c})$ | 가중치 <br> (d) | 분야별 최종점수 (c) $\times$ (d) |
| 토지이용 | 4 |  |  | 5 |  |
| 교통 | 4 |  |  | 5 |  |
| 에너지 | 21 |  |  | 20 |  |
| 재료 및 자원 | 10 |  |  | 15 |  |
| 수자원 | 13 |  |  | 10 |  |
| 환경오염방지 | 9 |  |  | 5 |  |
| 유지관리 | 7 |  |  | 7 |  |
| 생태환경 | 18 |  |  | 15 |  |
| 실내환경 | 19 |  |  | 18 |  |
| 합 계 |  |  |  |  |  |
| 리모델링에 따른 가산 점수(4.2.5/4.2.6 항목) |  |  |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quad$ 필수항목 이행 여부 | Yes/No |  |  |  |
| :--- | :--- | :--- | :---: | :---: |
| 3.1 .1 에너지 절약 |  |  |  |  |
| 4.2 .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
| 4.2 .2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  |
| 5.2 .1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  |  |  |
| 7.1 .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  |
| 9.1 .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  |  |  |
| 총 점 |  |  |  |  |
| 등 급 |  |  |  |  |
|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마. 판매시설

| 부 문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1. <br> 토지 <br> 이용 | 1.1 생태적 가치 | 1.1.1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1.2 인접대지 영향 | 1.2.1 | 일조권 간섭방지 대 책의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2 . \\ \text { 교통 } \end{gathered}$ | 2.1 교통부하 저감 | 2.1.1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 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 <br> 항목 | 2 |
|  |  | 2.1.2 |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 를 위한 사워시설 마련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3. 에너지 | 3.1 에너지 절약 | 3.1.1 | 에너지 효율향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 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서 취득한 점수를 근거로 평가 | 필수 <br> 항목 | 12 |
|  |  | 3.1.2 | 계량기 설치 여부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지속가능한 <br> 3.2 에너지원 사용 | 3.2.1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 라 점수를 부여 | 평가 <br> 항목 | 3 |
| $\begin{gathered} 4 . \\ \text { 재료 } \\ \text { 및 } \\ \text { 자원 } \end{gathered}$ | 4.1 자원 절약 | 4.1.1 |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비재 절약 | 건축물 내 화장실에서 세수 후 건조방 법에 대하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 4.2 <br> 지 속 가 능 한 <br> 자원 활용 | 4.2.1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여부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 마크 인증제 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4.2.2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 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 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4.2.3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수립 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 4.2.4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 4.2.5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 조부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br> 항목 | 7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4.2.6 | 기존 건축물의 비내 력벽 재사용으로 재 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 벽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항목 | 2 |
| $\begin{gathered} 5 . \\ \text { 수자원 } \end{gathered}$ | 5.1 | 수순환 체 계 구축 | 5.1.1 |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 면적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5.2 | 수자원 절약 | 5.2.1 | 생활용 상수 절감 대 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 에 따라 평가 | 필수 <br> 항목 | 4 |
|  |  |  | 5.2.2 | 우수 이용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 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 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 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5.2.3 |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 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율을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6. <br> 환경 <br> 오염 |  | 지구 온난화 방지 | 6.1.1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 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방지 |  |  | 6.1.2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 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begin{gathered} 7 . \\ \text { 유지 } \\ \text { 관리 } \end{gathered}$ | 7.1 | 체계적인 현장관리 | 7.1.1 |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계획의 합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 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평가 <br> 항목 | 1 |
|  | 7.2 | 효율적인 건물관리 | 7.2.1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 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 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 7.2.2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8. <br> 생태 <br> 환경 | 8.1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  | 8.1.1 | 자연지반 녹지율 |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 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8.2 | 외부공간 및 건 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8.2. | 생태 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 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 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 | 평가 <br> 항목 | 6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확보 |  |  | 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 |  |  |
|  | 8.3 | $\begin{aligned} & \text { 생물서식공 } \\ & \text { 간 조성 } \end{aligned}$ | 8.3. | 비오톱 조성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 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9. <br> 실내 <br> 환경 | 9.1 | 공기환경 | 9.1.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 방출자재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정도 에 대한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 9.1.2 |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기구 설계도서 확인 | 평가 <br> 항목 | 3 |
|  |  |  | 9.1.3 | CO 2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환기량 평가 | 매장 내의 CO 2 농도를 모니터링 및 제 어할 수 있는 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 여부, 이용자를 위한 CO 2 농도 디스펠 레이 장치의 매장 내 설치여부, 적정 CO 2 농도 제어에 필요한 환기성능(환기 량) 확보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6 |
|  |  |  | 9.1. | 건축자재로부터 배출 되는 그 밖의 유해물 질 억제 |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 용하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9.2 | 온열환경 | 9.2 .1 | 실내 자동온도 조절 <br> 장치 채택 여부 |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적용 비율 | 평가 <br> 항목 |
|  | 2.3 |  |  |  |  |  |
|  | 쾌적한 실내 <br> 환경 조성 | 9.3 .1 | 휴식 및 재충전을 <br> 한 귕간 마련 |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 <br> 용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파매시설 |
| :---: | :---: | :---: | :---: |
| 평가부문 | 3 에너지 |  |  |
| 평가범주 | 3.1 에너지 절약 |  |  |
| 평가기준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 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  |  |
| 평가방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를 근거로 평가 |  |  |
| 배 점 |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구 분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가중치 |
|  | 1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 1.0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구 분 <br> 2 급 <br> 3 급 <br> 4 급 <br> 5 급 <br> 6 급 <br> 7 급$\|$- 에너지 <br> 바닥면족 <br> ※ 에너지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평점합계의 평균이 85 점 이상 90 점 미만인 경우 평점합계의 평균이 80 점 이상 85 점 미만인 경우 평점합계의 평균이 75 점 이상 80 점 미만인 경우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평점합계의 평균이 65 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평짐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 가중치 <br> 0.90 <br> 0.80 <br> 0.70 <br> 0.60 <br> 0.50 <br> 0.40 |
| :---: | :---: | :---: | :---: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 조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br> -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6 <br>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  |  |
| 제출 <br> 서류 |  |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등)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판매시설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에너지 |  |  |
| 평가범주 | 3.1 | 에너지 절약 |  |  |
| 평가기준 | 3.1.2 | 계량기 설치 여부 |  |  |
| - 평가 세부기준 |  |  |  |  |
| 평가목적 |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가 전력 및 화석연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용도별 사용 에너지의 계량기를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
| 평가방법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  |  |  |
| 배 점 | 2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구 분 |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설치 여부 |  | 가중치 |
|  | 1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5종 이상 설치된 경우 |  | 1.0 |
|  | 2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3종 이상 설치된 경우 |  | 0.5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판매시설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에너지 |  |  |
| 평가범주 | 3.2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  |  |
| 평가기준 | 3.2.1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  |
| - 세부 평가기준 |  |  |  |  |
| 평가목적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  |  |  |
| 평가방법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구 분 |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수준 |  | 가중ㅊ |
|  | 1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 1.0 |


| $\begin{array}{\|l\|l\|} \hline K \\ \text { K\|O } \\ \hline \end{array}$ | $\stackrel{\infty}{\circ}$ | $\bigcirc$ | $\stackrel{\square}{8}$ | ®̌ |  |  |
| :---: | :---: | :---: | :---: | :---: | :---: | :---: |
|  | o <br> $\mathrm{N} \mid-\mathrm{H}$ K <br>  <br> $\frac{0}{\substack{10}}$ <br> ケे <br> $\frac{\square}{\text { o }}$ <br> 夜兩 HIT of小 버 $\frac{\frac{1}{10}}{\frac{1}{1}}$形 如 $\frac{10}{10}$ ond如 如踣 $\rightarrow \frac{2}{5}$ ㄱo ${ }^{\text {² }}$㖕。戸 邓 | す <br> $\mathrm{N}=\mathrm{N}$ $\langle+\|$ <br>  <br> $\frac{10}{2}$ <br> $\frac{10}{0}$ <br> 0 <br> 웅 <br> 品 <br> $\stackrel{1}{10}$ <br> 㝕 <br>  <br> 디 of <br> 」 <br>  <br> 岍 如 <br> 잎 ond <br> 边 $\frac{2}{2}$ <br> 衣 <br> 站 $\frac{2}{5}$ <br> 和 ${ }^{2}$ <br> 㗊 | す <br>  <br>  <br>  <br> ลे <br> $\stackrel{\sigma}{\stackrel{\sigma}{10}}$ <br> 夜 <br> 叔 <br> 디 <br> 小 <br> 버 $\frac{10}{\frac{10}{10}}$ <br> 岍 如 <br> 잎 op <br> 边 $\frac{\text { 如 }}{2}$ <br> 衣 <br> 站 $\frac{2}{5}$ <br> 手 <br> 市 |  |  |  |
| ［1］ | $\stackrel{\text { H1／}}{\sim}$ | $\stackrel{\text { r｜m }}{\sim}$ | $\stackrel{\text { H17 }}{4}$ | 劤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 제출 서류 | 예비 <br> 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
|  | 본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br> - 현장설치 사진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평 점 |
| :---: | :---: | :---: | :---: |
|  |  | 경우 |  |
|  |  |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 2.0 |
|  |  |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 1.0 |
|  |  | 3.2 .1 항꼭의 신•재생에너지 시실의 실치 ㅂㅣㅠㅠㄹㅇㅣ 5밥 이상인 경우 1.0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br>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br>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  |
| 제출서류 | 예비 <br> 인증 | - 관련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br>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설계도서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필수항목 이행 여부 |  |
| :--- | :--- |
| 3.1.1 에너지 절약 | Yes/No |
| 4.2 .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4.2 .2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5.2 .1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
| 7.1 .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9.1 .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
| 총 점 |  |
| 등 급 |  |
|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바. 숙박시설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1. <br> 토지 <br> 이용 | 1.1 생태적 가치 | 1.1 .1 <br> 기존대지의 생태학 <br> 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 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평가 <br> 항목 | 2 |
|  | 1.2 인접 대지 영향 | 12. 일조권 간섭방지 <br> 1.2.1 대책의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 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2 . \\ \text { 교통 } \end{gathered}$ | 2.1 교통부하 저감 | 2.1.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 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 <br> 항목 | 2 |
|  |  | 2.1.2 <br> 자전거 보관소 설 치 여부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3 . \\ \text { 에너지 } \end{gathered}$ | 3.1 에너지 절약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 한 점수를 근거로 평가 | 필수 <br> 항목 | 12 |
|  |  | 3.1.2 계량기 설치 여부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 기 설치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3.1.3 조명에너지 절약 | 키택홀더와 조명절약시스템(조명조절기, 리 모컨, 타이머 등)의 채택여부에 대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 3.2 <br> 지속가능한 에 너지원 사용 | 3.2.1 신•재생에너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 | 평가 <br> 항목 | 3 |
| 4. <br> 재료 <br> 및 자원 | 4.1 <br> 지속가능한 자 원 활용 | 유효자원 재활용을 <br> 4.1.1 위한 친환경인증제 품 사용여부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 마크 인증제품 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4.1.2 <br>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4.1.3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 4.1.4 <br>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 4.1.5 <br> 기존 건축물의 주 요구조부 <br> 재사용으 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 부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br> 항목 | 7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4.1.6 | 기존 건축물의 비내 력벽 재사용으로 재 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 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5 . \\ \text { 수자원 } \end{gathered}$ | 5.1 | 수순환 체계 구축 | 5.1. | 우수부하 절감대책 의 타당성 |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 적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5.2 | 수자원 절약 | 5.2.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 필수 <br> 항목 | 4 |
|  |  |  | 5.2. | 우수 이용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 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5.2. |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의 사용율을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6. <br> 환경 |  | 지구 온난화 방지 | 6.1.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 템의 적용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오염 <br> 방지 |  |  | 오존층 보호를 위 <br> 6.1.2 한 특정물질의 사 용 금지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7. <br> 유지 <br> 관리 | 7.1 | 체계적인 현장관리 | 환경을 고려한 현 <br> 7.1.1 장관리계획의 합 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 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평가 <br> 항목 | 1 |
|  | 7.2 | 효율적인 건물관리 | 운영/유지관리 문서 <br> 7.2.1 및 지침 제공의 타 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 7.2.2 $\begin{aligned} & \mathrm{TAB} \text { 및 커미셔닝 } \\ & \text { 실시 }\end{aligned}$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 7.3 | 효율적인 <br> 고객관리 | 7.3.1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제공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8. <br> 생태 <br> 환경 | 8.1 | 대지내 녹지 공간 조성 | 8.1.1 자연지반 녹지율 |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 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 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8.2$ | 외부공간 및 건 물 외 피 의 생태적 기능 확보 | 8.2. | 생태 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 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 적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6 |
|  |  | $\begin{aligned} & \text { 생 물서 식 공 } \\ & \text { 간 조성 } \end{aligned}$ | 8.3 | 비오톱 조성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 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9. <br> 실내 <br> 환경 | 9.1 공 |  | 9.1. | 실 내공기 오 염물 질 저방출자재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 한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 9.1. | 자연환기성능 확보 여부 | 투숙객이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환기구의 설치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9.1. |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기 위한 공조 급-배 기구 설계도서 확인 | 평가 <br> 항목 | 3 |
|  |  |  | 9.1. | 건 축 자 재 로 부 터 배 출되는 그 밖의 유 해물질 억제 |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 하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IV．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부 문 |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9.2 | 온열환경 | 9．2．1 <br> 객실 내 자동온도 <br> 조절장치 채택 여부 | 객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적용 비율 | 평가 <br> 항목 | 2 |
|  |  | 음환경 | 9．3．1 <br> 객실간 경계벽 차 음성능 수준 | 객실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 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건식벽체인 경우에는「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  | 9．3．2 교통소음（도로，철도）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 시）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9.4 | 쾌적한 <br> 실내환경 <br> 조성 | 9．4．1 <br>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 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9．4．2 <br> 투숙객을 위한 쾌적 <br> 한 실내환경 조성 | 투숙객에게 실내환경 조절방식의 제공여부 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  | 숙박시설 |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에너지 |  |  |  |  |  |
| 평가범주 | 3.1 에너지 절약 |  |  |  |  |  |
| 평가기준 | 3.1.1 에너지 효율향상 |  |  |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  |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 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  |  |  |  |  |
| 평가방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를 근 거로 평가 |  |  |  |  |  |
| 배 점 |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  | 구 분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  |  | 가중치 |
|  | 1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  |  |  | 1.00 |
|  | 2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  |  |  | 0.9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구 분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가중치 |
| :---: | :---: | :---: | :---: | :---: |
|  |  | 3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85 점 이상 90 점 미만인 경우 | 0.80 |
|  |  | 4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80 점 이상 85 점 미만인 경우 | 0.70 |
|  |  | 5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0 점 미만인 경우 | 0.60 |
|  |  | 6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 0.50 |
|  |  | 7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 0.40 |
|  |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평점합계의 평균은 각 단위건축물의 바 닥면적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br>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 조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br> -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6 <br>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등)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구 분 |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설치 여부 | 가중치 |
| :---: | :---: | :---: | :---: | :---: |
|  |  | 2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3종 이상 설치된 경우 | 0.5 |
|  |  | -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예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콘센트, 공조용 팬동력, 그 밖의 <br> - 중앙컴퓨터시스템에서 용도별 사용에너지 검침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참고자료 |  | -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br> - BREEAM for Office |  |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계량기 설치가 포함된 설계도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  |  |
|  | 본인증 | - 계량기 설치 도서 <br> - 계량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증빙서류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숙박시설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에너지 |  |  |
| 평가범주 | 3.1 | 에너지 절약 |  |  |
| 평가기준 | 3.1 .3 | 조명에너지 절약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 평가목적 | 조명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  |  |  |
| 평가방법 | 키택홀더와 조명절약시스템(조명조절기, 리모컨, 타이머 등)의 채택여부에 대한 평가 |  |  |  |
| 배 점 | 4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구 분 | 키택홀더 및 조명절약시스템 채택 여부 |  | 가중치 |
|  | 1급 | 객실 전체에 조명 조절용 키택홀더(key tag holder)와 조명절약시스템(조 명조절기(dimmer 등), 리모컨, 타이머 등)을 적용한 경우 |  | 1.0 |
|  | 2급 | 객실 전체에 조명 조절용 키택홀더(key tag holder)를 설치한 경우 |  | 0.5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객실전체 조명 조절용 키택홀더(key tag holder) 설치 관련자료 <br> - 조명절약시스템(조명조절기, 리모컨, 타이머 등) 설치 관련자료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구 분 |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 가중치 |
| :---: | :---: | :---: | :---: |
|  | 2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0.8 |
|  | 3 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0.6 |
|  | 4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0.4 |
|  | 5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0.2 |
|  | ※ 신재생 에 <br> 에너지 <br> 재생에니 <br> ※ 단, 의무 <br> * 신에너지 <br> 법"에서 <br> 지 등을 | 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div$ 전체 난방설비용량 $)$ 냉방용량 $\div$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div$ 전체 전기설비용 어지 급탕부하 $\div$ (전체 급탕부하 x 5) \}] x 100 <br> 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 \%$ 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br> 및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말함 | (신재생 $\text { ) }+\{\text { 신 }$ <br> 급 촉진 풍력에너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  | 예비 <br> 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숙박시설 |  |
| :---: | :---: | :---: | :---: | :---: |
| 평가부문 | 6 환경오염방지 |  |  |  |
| 평가범주 | 6.1 지구 온난화 방지 |  |  |  |
| 평가기준 | 6.1.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
| - 세부 평가기준 |  |  |  |  |
| 평가목적 |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건설부문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므로, 이를 건축물의 계획단계 에서부터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절감을 위해 적용된 기술 및 사용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한다. |  |  |  |
| 평가방법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각 평점의 합, 최대 3점 적용 |  |  |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평 점 |
|  | 난방설비용량 또는 냉방설비용량의 $20 \%$ 이상을 건축물 내 열병합발전으로 충당하는 |  |  | 2.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평 점 |
| :---: | :---: | :---: | :---: |
|  |  | 경우 |  |
|  |  |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 2.0 |
|  |  |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 1.0 |
|  |  | 3.2.1 항목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이 5급 이상인 경우 | 1.0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br>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br>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  |
| 제출서류 | $\begin{aligned} & \text { 예비 } \\ & \text { 인증 } \end{aligned}$ | - 관련 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br> - 에너지성능검토서 및 사용연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
| :---: | :--- | :--- | :--- | 숙박시설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 :---: | :---: |
|  | $\begin{aligned} & \frac{\mathrm{KlO}}{\mathrm{O}} \mathrm{~J} \\ & \stackrel{\mathrm{H} J}{ } \end{aligned}$ |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숙박시설 인증등급 산정표 |  |  |  |  |  |
| :---: | :---: | :---: | :---: | :---: | :---: |
| 분 야 | 분야별 총점 <br> (a) | 획득점수 <br> (b) | 획득비율1) <br> (b) $/(\mathrm{a})=$ (c) | 가중치 <br> (d) | 분야별 최종점수 <br> (c) $\times$ (d) |
| 토지이용 | 4 |  |  | 5 |  |
| 교통 | 4 |  |  | 5 |  |
| 에너지 | 21 |  |  | 25 |  |
| 재료 및 자원 | 9 |  |  | 15 |  |
| 수자원 | 13 |  |  | 10 |  |
| 환경오염방지 | 6 |  |  | 5 |  |
| 유지관리 | 6 |  |  | 7 |  |
| 생태환경 | 12 |  |  | 10 |  |
| 실 내환경 | 23 |  |  | 18 |  |
| 합 계 |  |  |  |  |  |
| 리모델링에 따른 가산 점수(4.1.5/4.1.6 항목) |  |  |  |  |  |


| 필수항목 이행 여부 | Yes/No |  |  |  |
| :--- | :--- | :---: | :---: | :---: |
| 3.1 .1 에너지 절약 |  |  |  |  |
| 4.1 .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
| 4.1 .2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  |
| 5.2 .1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  |  |  |
| 7.1 .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  |
| 9.1 .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  |  |  |
| 총 점 |  |  |  |  |
| 등 급 |  |  |  |  |
|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1. <br> 토지 <br> 이용 | 1.1 | 생태적가치 | 1.1. | 기존대지의 생태학 적 가치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 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 평가 <br> 항목 | 2 |
|  | 1.2 | 인접 대지 <br> 영향 | 1.2. | 일조권 간섭방지 대 책의 타당성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 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 평가 <br> 항목 | 2 |
| $\begin{gathered} 2 . \\ \text { 교통 } \end{gathered}$ | 2.1 | 교통부하 <br> 저감 | 2.1. |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 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 평가 <br> 항목 | 2 |
|  |  |  | 2.1. |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샤워시설 마련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 3. 에너지 | 3.1 | 에너지 <br> 절약 | 3.1. | 에너지 효율향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 득한 점수를 근거로 평가 | 필수 <br> 항목 | 12 |
|  |  |  | 3.1. | 계량기 설치 여부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 량기 설치 여부 | 평가 <br> 항목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지 속 가 능한 에너지원 사용 | 3.2.1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평가 <br> 항목 | 3 |
| 4. <br> 재료 <br> 및 <br> 자원 |  | 자원 절약 | 4.1.1 | 화장실에서 사용되 는 소비재 절약 | 건축물내 화장실에서 세수 후 건조방법에 대하여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  | 지 속가 능 한 <br> 자원 활용 | 유효자원 재활용을 <br> 4.2.1 위한 친환경인증제 <br> 품 사용여부 |  |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 마크 인증제품 의 사용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 4.2.2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 목 종류에 의해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 4.2.3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 증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  |  | 4.2. |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 부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가산 <br> 항목 | 7 |
|  |  |  | 4.2.5 | 기존 건축물의 비내 |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 | 가산 | 2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 력벽 재사용으로 재 료 및 자원의 절약 | 의 재사용율에 따라 평가 | 항목 |  |
| $\begin{gathered} 5 . \\ \text { 수자원 } \end{gathered}$ | 5.1 | 수순환 체 계 구축 | 5.1.1 | 우수부하 절감대책 의 타당성 | 대지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 적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5.2 | 수자원 절약 | 5.2 .1 |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 필수 <br> 항목 | 4 |
|  |  |  | 5.2.2 | 우수 이용 |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 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 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5.2.3 | 중수도 설치 |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의 설치 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 으로의 사용율을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6. <br> 환경 <br> 오염 <br> 방지 | 6.1 <br> 지구온 난화 <br> 방지 |  | 6.1.1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 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6.1.2 | 오존층보호를 위하 |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 | 평가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범 주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질 기준에 따라 평가 | 항목 |  |
| $\begin{gathered} 7 . \\ \text { 유지 } \\ \text { 관리 } \end{gathered}$ | 7.1 체계적인  <br>  현장관리 | 7.1.1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계획의 합리성 |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 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 평가 <br> 항목 | 1 |
|  | $\begin{array}{ll} \text { 7.2 효 율 적 인 } \\ \text { 건물관리 } \end{array}$ | 운영/유지관리 문서 <br> 7.2.1 및 지침 제공의 타 당성 |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 필수 <br> 항목 | 2 |
|  |  | $\begin{array}{\|ll} \text { 7.2.2 } & \begin{array}{l} \mathrm{TAB} \\ \text { 및 킬시 미 셔닝 } \end{array} \end{array}$ |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여부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8. <br> 생태 <br> 환경 | 8.1 대지 내 녹 | 8.1.1 자연지반 녹지율 |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 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 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8.2 <br> 외부공간 및 건 물외 피 의 생태적 기능 확보 | 8.2.1 생태면적률 |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 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6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 범 주 |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 분 | 배 점 |
| :---: | :---: | :---: | :---: | :---: | :---: | :---: | :---: |
|  | 8.3 | 생 물서 식 공 <br> 간 조성 | 8.3.1 | 비오톱 조성 |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 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 평가 <br> 항목 | 4 |
| 9. <br> 실 내 <br> 환경 | 9.1 | 공기환경 | 9.1.1 | 실 내 공 기 오 염 물 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정도에 대한 평가 | 필수 <br> 항목 | 3 |
|  |  |  | 9.1.2 | 자연 환기성능 확보 여부 | 이용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환기구의 설치 여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  |  |  | 9.1.3 | 건축자재로 부터배출 되는 그 밖의 유해 물질 억제 | 건축물내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 하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1 |
|  | 9.2 | 음환경 | 9.2.1 | 교통소음(도로,철도) <br> 에 대한 실내 소음도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 시)에서 정하고 있는 예측 및 측정방법에 따라 실내소음도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2 |
|  | 9.3 |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 9.3.1 |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 | 거주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 평가 <br> 항목 | 3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구 분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가중치 |
| :---: | :---: | :---: | :---: |
|  | 2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 0.90 |
|  | 3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 0.80 |
|  | 4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80 점 이상 85 점 미만인 경우 | 0.70 |
|  | 5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 0.60 |
|  | 6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 0.50 |
|  | 7 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65 점 이상 70 점 미만인 경우 | 0.40 |
|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평점합계의 평균은 각 단위건축물의 바닥 면적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br>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 용도에 맞춰 평가하 되, 그 밖의 건축물은 업무용(사무)으로 간주하여 평가 <br>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2 조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br> - 신축건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강화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6 <br>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  |  |

IV．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110 |  |
| :---: | :---: |
| $\begin{aligned} & \bar{x} \\ & \text { 市 } \\ & x_{0} \end{aligned}$ | 页 |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H } \end{aligned}$ | ¢ 只 和 |
| $\frac{\text { 껸 }}{\frac{1}{K}}$ | $\frac{\frac{\pi}{N}}{\frac{1}{3}}$ |
| $\begin{aligned} & \text { H1, } \\ & \text { 荷 } \\ & \text { 尘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W } \\ & \text { सo } \\ & \text { स } \end{aligned}$ |
| 砍 |  |
| 文 | \％Th |
| 105 | HO 㓫 |
| 㫘 | 守 琒 |
| \％ | 文 $\frac{1}{\text { 人 }}$ |
| 如 | N ${ }^{1}$ |
| $\bar{\sim}$ | － |
| T | 佼 |
| $\overline{0}$ | 石 如 |
| ＇ | ＇＇ |
| 픃 $\frac{\mathrm{Klo}}{0} \mathrm{~J}$ | $\begin{aligned} & \frac{\mathrm{K} \mid 0}{\mathrm{O}} \\ & \text { 거 } \end{aligned}$ |
|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그 밖의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에너지 |  |  |
| 평가범주 | 3.1 | 에너지 절약 |  |  |
| 평가기준 | 3.1.2 | 계량기 설치 여부 |  |  |
| - 평가 세부기준 |  |  |  |  |
| 평가목적 |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가 전력 및 화석연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용도별 사용 에너지의 계량기를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
| 평가방법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설치 여부 |  |  |  |
| 배 점 | 2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구 분 | 용도별 사용에너지의 계량기 설치 여부 |  | 가중치 |
|  | 1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5종 이상 설치된 경우 |  | 1.0 |
|  | 2급 | 용도별 사용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3종 이상 설치된 경우 |  | 0.5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0 |  |  |  | 그 밖의 건축물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에너지 |  |  |  |  |
| 평가범주 | 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  |  |  |  |
| 평가기준 | 3.2.1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
| - 세부 평가기준 |  |  |  |  |  |
| 평가목적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  |  |  |  |
| 평가방법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 산출기준 | - 평점 $=($ 가중치 $) \times($ 배점 $)$ |  |  |  |  |
|  | 구 분 |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  |  | 가중ㅊ |
|  | 1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1.0 |


|  | 구 분 |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 가중치 |
| :---: | :---: | :---: | :---: |
|  | 2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0.8 |
|  | 3 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0.6 |
|  | 4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0.4 |
|  | 5급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0.2 |
|  | ※ 신재생에 <br> 지 냉방 <br> 너지 급 <br> ※ 단, 의무 <br> ※ 신에너지 <br> 서 정의 <br> 말함 | 저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div$ 전체 난방설비용량 $)+($ 량 $\div$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div$ 전체 전기설비용량 $)+$ 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 x 100 <br> 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 \%$ 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br> 및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 | 신재생에너 \{신재생에 <br> 촉진법"에 거지 등을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 :---: | :--- |
| 참고자료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br>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 제출서류 | 예비 <br> 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
|  | 본인증 | -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br> - 현장설치 사진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201 |  |  | 그 밖의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6 환경오염방지 |  |  |  |
| 평가범주 | 6.1 지구온난화방지 |  |  |  |
| 평가기준 | 6.1.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
| - 세부평가기준 |  |  |  |  |
| 평가목적 |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건설부문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므로, 이를 건축물의 계획단계 에서부터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 출량 절감을 위해 적용된 기술 및 사용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 평가한다. |  |  |  |
| 평가방법 |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  |  |  |
| 배 점 | 3점(평가항목) |  |  |  |
| 산출기준 | - 각 평점의 합, 최대 3점 적용 |  |  |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  | 평 점 |
|  | 난방설비용량 또는 냉방설비용량의 $20 \%$ 이상을 건축물 내 열병합발전으로 충당하 |  |  | 2.0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평 점 |
| :---: | :---: | :---: | :---: |
|  |  | 는 경우 |  |
|  |  |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 2.0 |
|  |  |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 1.0 |
|  |  | 3.2.1 항목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이 5급 이상인 경우 | 1.0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br>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br> - 「신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관련 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 에너지성능검토서 및 관련자료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IV.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구 분 | 분 야 | 분야별 총점 <br> (a) | 획득점수 <br> (b) | 획득비율1) <br> (b) $/(\mathrm{a})=$ (c) | 가중치 <br> (d) | 분야별 최종점수 <br> (c) $\times$ (d) |
| :---: | :---: | :---: | :---: | :---: | :---: | :---: |
| 그 밖의 건축물 | 토지이용 | 4 |  |  | 5 |  |
|  | 교통 | 4 |  |  | 5 |  |
|  | 에너지 | 17 |  |  | 25 |  |
|  | 재료 및 자원 | 8 |  |  | 15 |  |
|  | 수자원 | 13 |  |  | 10 |  |
|  | 환경오염방지 | 6 |  |  | 5 |  |
|  | 유지관리 | 5 |  |  | 7 |  |
|  | 생태환경 | 12 |  |  | 10 |  |
|  | 실 내환경 | 12 |  |  | 18 |  |
|  | 합 계 |  |  |  |  |  |
|  | 리모델링에 따른 가산 점수(4.4.3/4.4.4 항목) |  |  |  |  |  |

170

|  | 필수항목 이행 여부 | Yes/No |
| :---: | :---: | :---: |
|  | 3.1.1 에너지 절약 |  |
|  | 4.2.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
|  | 4.2.2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
|  | 5.2.1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
|  | 7.1.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
|  | 9.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
|  | 그 밖의 건축물 총점 |  |
|  | 등 급 |  |
| 1) 소수점 | 째자리에서 반올림 |  |

[표7]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가. 공동주택

| 등 급 | 심사점수 | 비 고 |
| :---: | :---: | :---: |
| 최우수(그린 1등급) | 74점 이상 | $\begin{aligned} & \text { 100점 } \\ & \text { 만점 } \end{aligned}$ |
| 우수(그린2등급) | 66점 이상 |  |
| 우량(그린3등급) | 58점 이상 |  |
| 일반(그린4등급) | 50점 이상 |  |

나.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 등 급 | 심사점수 | 비 고 |
| :---: | :---: | :---: |
| 최우수(그린 1등급) | 80 점 이상 |  |
| 우수(그린2등급) | 70점 이상 |  |
| 우량(그린3등급) | 60 점 이상 |  |
| 일반(그린4등급) | 50 점 이상 |  |

## V. 신재생에너지 사응 건죽물 인증

[표8]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